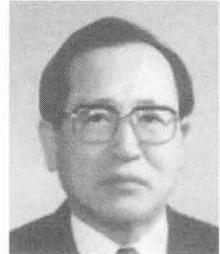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출발의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 2008년은 정치적 대결과 기름유출에서 빗어진
얼룩진 말과 바다의 오염을 씻고
화합을 통한 신한국 건설의 전기로 삼자 ”

한상욱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필자의 경우 두 가지 사건과 연관된 광경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건의 하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출 광경이고 다른 하나는 태안의 석유유출로 인한 바다오염과 이의 방제를 위한 전 국민적 참여행렬이다.

거의 모든 TV화면과 신문지면에서 예외 없이 보여주고 있는 두 사건의 모습은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리라 생각된다.

먼저 걱정스럽고 분노를 자아내는 광경은 현안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가지도자로서의 정책 공약은 거의 실종된 상태에서 상대에 대한 비방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는 선박에서의 대량의 석유유출과 이에 따른 바다오염과 늑장대응에 따른 어장의 피해확산이다.

다행스러운 광경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실천할 역량을 갖춰진 모습으로 비춰진 대통령당선자의 발빠른 행보와 사고해역에서의 전 국민적인 방제활동이다.

이는 분명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탈출시킬 좋은 양분이다.

무자년 새해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이고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그의 저서 우리공통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천명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보다 실질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신기원이 시작되는 해이며,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정에서 생겨난 오염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선진국진입을 이끈 88올림픽개최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지속가능발전과 이념과 의미를 공유하는 시학년풍을 화두로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는 원년이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말과 태안에서의 오염의 얼룩을 씻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고 입법부가 새로 구성되는 해이다.

작금의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염두

에 두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 유류유출관련 개인, 기업, 정부를 위한 CERES원칙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접근의 3가지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으로서의 공약사항이 되어야 할 ‘미래세대의 욕구를 손상시킴이 없이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법원칙을 소개한다.

4개장 22개항으로 구성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안된 법적원칙의 요약문(Summary of Proposed Legal Principl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원칙, 권리 및 책임

-기본적 인권

(1) 모든 인간은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적당한 환경적 기본 권리를 갖는다.

-세대간 형평

(2) 국가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환경자원 및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3) 국가는 현존하는 자연자원과 생태계의 이용에 있어 바이오스피어(생물권)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생태계와 생태학적 과정들을 지속시키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최적의 지속가능한 산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기준과 감시(모니터링)

(4) 국가는 충분한 환경보호 기준을 수립하고, 변화를 감시하며, 환경의 질과 자원 이용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발표하여야 한다.

-사전환경평가

(5) 국가는 환경 또는 자원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행위에 대한 사전환경평가를 작성하거나 요구하여야 한다.

-사전 통지, 접근 그리고 적합한 절차

(6) 국가는 계획된 행위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과 사법행위에 있어 동등한 접근성과 적합한 절차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원조

(7) 국가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함에 있어, (환경)보호가 계획과 개발행위 실행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취급되고, 다른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에 대

-협력을 위한 일반의무

(8) 국가는 전술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 선의로 협력하여야 한다.

2. 국제적 자연자원, 환경충돌에 관한 원칙, 권리, 의무

-합리적이고 공평한 사용

(9) 국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국제적 자연자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방과 경감

(10) 국가는 중요한 손해를 야기 시키는 어떤 국제적 환경 충돌도 예방하거나 경감시켜야 한다.(아래의 11항과 12항에서 언급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엄격한 책임

(11) 국가는 위험하지만 유익한 행위를 실행하거나 허가할 때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예방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그리고 그 행위들이 착수된 시점에서 해로움이 인지되지 못하는 때는 중요한 국제적 해악조차도 배상이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사전동의 : 예방비용이 손해를 크게 초과할 때

(12) 국가는 행위들을 실행하거나 허가한 계획이 예방비용보다 훨씬 큰 국제적인 손해를 야기 시킬 때, 그 행위가 실행되는 공정한 조건아래에서 영향을 받은 국가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

(만일 동의에 이르지 못하면, 22항 참조)

-비차별

(13) 국가는 국내에 적용하듯이 국제간의 자연자원과 환경의 충돌에 관하여 환경지도와 영향을 위한 가장 적은 동일한 기준을 최소한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즉, 국가가 국민에게 하지 않는 것을 다른 국가에게도

하지마라)

-국제적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을 위한 일반의무

- (14) 국가는 국제적 자연자원의 최적 사용과 효과적 예방 또는 국제적 환경 충돌의 경감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선의로 협력하여야 한다.

-정보의 교환

- (15) 당사국은 다른 관련 국가에게 국제적 자연자원 또는 환경충돌에 관한 관련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사전 평가와 통지

- (16) 국가는 관련국가들에게 적시 통보와 더불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중요한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거나 요구하여야 한다.

-사전 협의

- (17) 당사국은 자연자원 또는 환경의 이용으로 현존하는 또는 잠재적인 국제적 충돌에 관하여 다른 관련국가들과 선의로서 초기단계에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평가와 보호를 위한 협력 장치

- (18) 국가는 국제적인 자연자원과 환경충돌에 관하여 모니터링, 과학적 조사 및 기준설정에 있어 관련국가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비상 상황

- (19) 국가는 국제적인 환경충돌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비상상황에 관하여 긴급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비상시에는 신속한 경고,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공평한 접근과 대우

- (20) 국가는 자연자원 또는 환경의 이용으로 국제적 충돌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정과 사법행위에 있어 동등한 접근성, 적합한 절차 그리고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국가의 책임

-국가의 책임

- (21) 국가는 환경에 관한 국제적인 의무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분쟁의 평화적 해결

- (22) 국가는 평화적 수단으로 환경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상호합의나 다른 분쟁해결 조정이 10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분쟁은 조정에 따르게 하며, 만일 그 후로도 미해결된다면, 관련국가의 요청으로 중재재판 또는 사법적 해결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다음은 늑장대응으로 인한 피해확산이 재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유류유출관련개인, 기업, 정부를 위한 CERES원칙을 소개한다. 이는 1988년 '환경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제인 연합체(CERES : 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ve Economics)'는 개인, 기업, 정부를 위한 지침(원래 Valdez원칙, 지금은 CERES 원칙)을 수립하였다.

그 배경-기업의 책임과 전문 및 내용을 소개한다.

1) 배경 – 기업의 책임

1988년 '환경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제인 연합체(CERES : 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ve Economics)'는 개인, 산업, 정부를 위한 지침(원래 Valdez원칙, 지금은 CERES원칙)을 수립하였다.

스폰서로는 National Audubon Society, Sierra Club, U.S.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AFL-CIO Industrial Union Department 등이 있다.

연합체의 목적은 산업체들로 하여금 CERES원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들의 환경성능을 향상시키도록 고무시

키는 것이다.

1989년 Exxon사 소유의 유조선 발디스호가 알라스카 근처 Prince William Sound를 항해하던 중 무려 1천1백만 갤런의 기름을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엄청난 해양오염사고로 인해 Exxon사는 대중으로부터 통렬한 비난을 받았으며, 기업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투자기준을 담은 발디스 원칙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유출사고로 인해 규정이 강화되어 알라스카에서 조업하는 유류회사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 전문 및 내용

이 원칙들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기업과 주주들이 환경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널리 천명한다.

기업은 그들의 사업을 환경에 책임 있는 관리업무로 간주하고, 지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남겨둘 수 있는 방법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기업이 미래세대의 능력을 그들의 요구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충당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실행을 기술의 개발, 건강과 환경과학에서의 새로운 이해에 비추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장기공약이 될 것으로 인식한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을 이행하는데 있어 일관성 있고, 측정 가능한 진보를 이루고자 하며, 전 세계를 통해 우리가 활동하는 곳 어느 곳에라도 그것을 적용하고자 한다.

(1) 생물권의 보호(Protection of Biosphere)

우리는 대기, 수질, 지구전체, 지구의 거주자들에 대해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오염물질의 방출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겠다. 우리는 강, 호수, 습지, 연안지역, 바다를 보호할 것이고, 온실효과, 오존층고갈, 산성비, 스모그 등의 원인을 최소화하겠다.

(2) 천연자원을 지속가능하도록 사용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우리는 물, 토양, 삼림과 같은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들

을 지속가능하도록 사용하겠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해가면서 야생서식처, 오픈스페이스, 자연보호구역을 보호하겠다.

(3) 폐기물의 감축과 발생제거

(Reduction and Disposal of Wastes)

우리는 가능한 한 재생 재료들을 이용하며, 폐기물, 특히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겠다. 우리는 모든 폐기물을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법을 통해 처리하겠다.

(4) 에너지의 현명한 사용(Wise Use of Energy)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있어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의 효율성과 보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투자하겠다. 우리는 우리가 생산,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겠다.

(5) 위험의 저감(Risk Reduction)

우리는 안전한 기술과 작동절차의 도입, 비상사태에 대한 끊임없는 준비를 통해 우리가 일하는 곳의 피고용인들과 지역주민들에 대해 환경적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겠다.

(6) 안전한 상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계승

(Marketing of Safe Products and Services)

우리는 반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품,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봉사하겠다. 우리는 환경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7) 피해보상(Damage Compensation)

우리는 우리가 야기한 어떠한 환경적 피해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환경을 전적으로 회복하도록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책임을 지겠다.

(8) 대외공표(Disclosure)

우리는 우리의 피고용인들과 대중에게 우리의 활동과 관련하여 환경피해를 초래하거나 건강 및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고들을 공표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지워질 잠재적인 환경적, 건강, 안전에의 위험을 공표할 것이다. 또한, 환경에 대한 위험의 발생이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위험한 어떠한 조건을 발표하는 피고용인들에 대해 전혀 반대적 행위를 취하지 않겠다.

(9) 환경관리자와 경영자

(Environmental Directors and Managers)

우리는 CERES원칙을 수행할 관리자원(management resources)으로 하여금, 우리의 수행노력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게끔 하며, 이사회와 총사무국에 모든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과정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환경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임원위원회를 설립하겠다. 적어도 위원회의 1명은 기업보다 환경의 이익을 먼저 표방할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다.

(10) 평가와 연간감사

(Assessment and Annual Audit)

우리는 전 세계의 활동을 망라하여 이러한 원칙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또한, 법규나 규정의 준수여부에 있어서 우리가 진보적이었는가에 대한 매년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공표하겠다. 우리는 우리가 매년 수행하고, 대중에게 유용하게 될 독립적인 환경감사절차를 적절하게 시행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무자년 신년인사에서 강조한 한자 사자성어인 '시화연풍'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IIED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신기원 브리핑' 자료의 요지를 소개한다. 이 자료에서는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2000년대를 조망하고 1999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선언과 21세기에 인류의 행동강령인 의제21를 이끌어 내는데 이념적인 지주가 된 기념비적인 Brundtland Report(일명 OUR COMMON

FUTURE)에 담긴 내용의 미흡한 실천에 기초한 반성과 향후 혁신에 대한 지침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재에 이르는 20년을 초기라하고 이후 20년을 신기원으로 구분하여 지금까지 일부계층에 의해 편협하게 해석되고 개념적인 수준에서 이용된 지속가능한 발전이 본래 추구했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을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 현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의미대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새로운 정부의 모든 구성원과 국민모두가 새겨둬야 할 덕목이라 할 수 있다. ☺

과거	현재
개념적 접근 → 자연과학과 경제학에 근거한 원리와 최적 사례를 제공	운영적 접근 → 인간과 생태계의 복지를 공히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에 근거
정책적 변화 → 정책연구는 정부와 의사결정자의 계획에 목표를 두나 아직 그들은 변하지 않고 있음.	정책적 변화 → 일상생활과 업무에 유권자가 지속성을 요청하고 수용함.
일반적 사례 → 그러나 의미는 특정 경우 분명하지 않음.	특정한 사례 → 수행우선순위나 비용면이 분명함.
환경정책 분야 → 실제 변화의 필요성을 위해 다른 정책영역을 격리시키는 것을 강조	주된 아젠다 → 무역, 국가안전보장, 산업 및 사회복지의 주요 분야에서 목표가 추구됨.
소수 앤드라이브에 의해 추진 →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공동체는 편협(서구적 또는 환경적으로)한 주도에 의해 추진됨.	다양하며 상향적 동인에 의해 추진 → 빙곤 집단, 사회적 동향 및 여타의 전통적 수단
정부에 의한 조직 → 그러나 정치가 나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자들은 시행에 영향을 미칠 방법이 거의 없음.	지구적 차원의 조직 → 지속가능한 발전의 강령은 국제연합과 여타의 다양한 연맹체에 의해 조성되고 공유됨.
수평적 협의 → 실행이 없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계획에 대하여 전례가 없는 정도	수직적 참여 그러나 →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그들이 해결안을 만드는 것을 북돋워줌.
신재된 실험적 사업 → 이례적으로 조직적인 시도	주된 제도적 변화 → 규정/책임/동의 확장 및 일반화
순수원 'Win-Win'에 집중 → 몇몇의 지역적인 성과(비용절감 등)	기초적 원인에 대한 대결 → 우선 순위와 교량관계를 설정하고 어려운 선택을 만들.
민간부문에 대한 부분적인 변화 → 자발적 접근은 산업계의 관심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선택가능성(Co-option)도 증가	민간부문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 → 공정한 입법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계획을 개발
기술이 유도하는(Tech-led) 발전 → 주로 환경오염이나 오존층 고갈 등의 단일 현안	거버넌스가 유도하는 과정 → 주로 기후변화, 기난, 불공정 교역과 같은 복합사안
불확실성과 불충분한 정보 → 전문분야가 분리되어 모든 분야가, 의사결정에 제한요인!	미래지향적 탐색 → 지식관리와 시스템 모니터링, 의사결정과 탄력성의 증진
경제적 목표 → 시행 중인 지속가능한 발전의의 한계를 설정하며, 회소 성은 시장을 통하여 관리	사회적 정의와 환경적 임계점 → 이 범주에 대한 새로운 초점을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출처 : IIED, 2007, A New Era in Sustainable Development An IIED Briefing

〈편집자주 - 신년호에 게재하지 못해 부득이 이번호에 게재함
(2007.12.27 작성됨)〉